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 4. 4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3월 24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1년 3월 25일
- 다. 상정일자 : 제16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1년 4월 4일)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김 종 철

### 가. 개정이유

동 일부개정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자치활동을 기획하고 조직해 내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원활한 순환 위촉으로 적극적인 봉사정신과 투철한 사명감 및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해촉 및 사임위원 재 위촉시 경과규정을 두어 신규위원 참여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제출된 것임

## 나. 주요개정 내용

- (1) 안 제17조제2항제3호에서는 위원으로 사직이나 해촉된 자를 재위촉할 경우에는 사직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격을 부여하도록 조항을 신설
- (2) 안 같은 조제7항제1호에서는 위원 및 별도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3) 안 같은 조제7항제2호에서는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원장을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유고시 새로 선출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
- (4) 안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또는 별도 고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후 연임 위촉되는 경우에는 안 제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금길)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위·해촉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적 자세의 확립과 투철한 책임감을 함양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개방화와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위·해촉에 대한 개정 규정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왔던 현직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해촉 후 이에 상응하는 대체 위원이 없거나 임기만료에 따른 대량 해촉으로 인원이 부족하여 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